

「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 안 이 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86개 지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축제위원회
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
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2)
- 나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3)
- 다.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라. 용어 정비(안 제7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축제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, 축제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와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 해촉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14조는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의 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평가 및 결과 반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, 평가대상과 지표, 외부기관 선정기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